호주의 석탄개발법제에 대한 연구

이승교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I. 들어가는 말

II. 호주 에너지 정책 및 법제현황

1. 호주 에너지 자원개발 정책 및 현황
2. 자원개발 관련 법률 현황

III. 호주 석탄개발 관련 법제

1. 호주 광업법 개관
   - A. 광업법
   - B. 환경보호법
   - C. 토지관리법
   - D. 원주민 토지 보호법
2. 자원개발관련 광업법 기본 법제
   - A. 자원개발관련 법률 체계
   - B. 광업권의 의의
   - C. 광산개발 허가 및 개발권
3. Western Austrialia 주의 광산개발 절차
   - A. 탐광허가권
   - B. 광물탐사권
   - C. 보유권
   - D. 채굴리스
4. 자원개발 관련 법적 절차
   - A. 광물탐사권
   - B. 평가리스 및 보유권
   - C. 채굴리스
   - D. 최저지불 조건
5. 환경보호 관련 법제
   - A. 사업의 통지 또는 평가 및 허가 단계
   - B. 정부평가 단계
   - C. 정부승인 단계

D. 기타 광산 운영관련 환경허가

6. 원주민과 광산개발 관련 제도
   - A. 원주권
   - B. 원주민의 토지소유권
   - C. 원주민 토지관련 권리와 광산개발

IV. 호주 외국인 광물산업 투자관련 법제

1. 외국인 투자관련 법제
2. 외국인 투자매수법
3. 에너지 산업에 관련 투자 종류
   - A. 탐사관련 투자
   - B. 광산개발관련 투자

V. 결론

Ⅰ. 들어가는 말

중국을 비롯한 신흥개발국가 (BRICS)의 등장과 해당국가의 값싼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막대한 생산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원자재를 경제적으로 조달하고 동시에 자원공급의 변동성 위험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안정적인 에너지자원의 확보가 큰 화두가 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가히 자원전쟁이라고 불릴만큼 국가간에 치열한 자원확보전을 벌이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 하에서 과거 에너지 자원에 관해 투자를 진행하던 기업의 사내변호사로서 본인은 호주의 에너지 자원 시장을 경험하였다. 에너지 자원은 그 자체만으로 국가 경제유지 및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예측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달과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호주는 아주 매력적인 자원투자 대상국가라고 볼 수 있다. 자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달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짧아, 여러 자원 수출국중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인하여 석탄관련 자원개발의 주요 대상국가로 꼽혀왔던 인도네시아와 호주 두 국가중에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호주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어,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호주는 국가산업 구조가 제조업이 다소 빈약하고, 1차 산업이나, 관광업과 같은 3차 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이며, 풍부한 자원과 연관산업의 발달로 인해 자원개발 및 투자에 유리한 측면도 있고, 앞서 말한 것 처럼 다른 자원보유국과 비교해서도 정치적, 경제적 위험이 낮아 자원분야가 호주내에서 투자와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산업구조가 우리와 달라서 우리의 경쟁국가이기 보다는 서로 상호보완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투자에 부담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제조업 기반과 풍부한 인적자원으로 인해 기술중심의 제조업이 강한 우리나라가 자원개발과 관련한 투자를 하게되면 호주로부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원자재 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다른 자원 수출국가에 비해서도 세계 최대 자원 최대소비처 중 하나인 중국, 일본, 한국과의 인접성으로 인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원수출을 오랫동안 해온 탓에 자원수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역시 우수하다고 볼 수 있어 자원개발과 관련된 투자에 있어서는 최적지로 꼽힌다. 호주 내부적으로도 자원산업은 국내성장의 8% 정도를 견인하고 있고 수출물량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호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자원산업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까닭에 호주가 가진 자원개발의 이점을 십분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 에너지관련 자원산업에 관한 투자법령이나 정책 파악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호주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규제와 인센티브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발전용 연료의 주 수입원인 호주의 석탄과 관련된 법률과 규제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도모하고 활용키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Ⅱ. 호주 에너지 정책 및 법제현황

1. 호주 에너지 자원개발 정책 및 현황

호주는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고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대륙의 하나로서 한 국가가 하나의 대륙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비슷한 규모의 면적 768만KM 평방미터에 달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광대한 영토의 자원을 바탕으로 OECD국가이면서 자원수출국이라는 특징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런 풍부한 자원들이 호주의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를 잡아왔으며, 연관 산업인 건설, 토목, 운송 및 금융에서 많은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전 지구적인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원자재 수요가 감소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물자원의 수출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호주의 에너지자원 중 2010년 매장이 확인된 석유는 41억 배럴로 세계적인 규모이며, 이와 관련된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 역시 29,000입방미터로서 전 세계 1.6%를 차지하고 있고, 석탄은 764억 톤으로서 전 세계매장량의 8.9%에 달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네번째로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1)]

호주의 자원사업은 1796년 시드니 북부 뉴케슬에서 석탄이 발견된 이후로 주요 산업이 되어왔다. 그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으나, 지금은 어느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어 호주 경제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실제로 호주의 광물 수출량은 198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고, 그 중에서도 광물 에너지 자원 수출은 현저할 정도로 많이 성장을 해왔는데, 자원 수출과 더불어 광물가격 역시 상승함에 따라, 2005년경부터 본격적으로 탐광사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기 시

1) 석탄에 대해서는 역청탄은 438억톤 (세계 매장량의 7%)로서 세계 5위 보유국 이며, 전 세계 석탄교역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세계 1위 석탄 수출국으로서 주요 매장 지역은 동부의 Qeensland 주 (58%), New South Wales 주 (38%)이다. KOTRA, 호주 자원개발 현황과 진출전략, Global market Report 13-048, 2013.06

작하였다. 이후 2007년 노동당이 집권하면서부터 에너지 자원 붐에 따라 경기호황을 누리기만 했던 과거와는 달리 에너지 자원개발의 생산성 향상, 인프라 추진,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추진하며, 공정한 노사관계를 위해 각종 노사관계법령 및 규제 사항을 개정하였다.[2)]

그러나, 최근 6년만에 노동당 집권을 끝내고 정권을 잡은 자유국민 연립당은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정책을 투자자 보호, 규제완화 등으로 수정하면서 직, 간접적으로 연관 고용인력이 110여만 명에 달하는 호주 에너지 자원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탄소세 폐지, 광물자원지대세 (MRRT) 폐지, 환경승인절차의 간소화 (One-stop-shop), Coal Seam Gas 관리정책 도입, 탐사비용 세액공제, 해양유전개발설비 보호 강화, 보류 탐사권 허가요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3)]

1) 탄소세 폐지 : 전기요금(10%), 가스요금 (9%) 인상으로 중산층에 과도한 부담을 야기함과 동시에 연간 약 90억불 정도에 이르는 조세부담으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했던 탄소세를 폐지 하였다.

2) 광물자원지대세(MRRT) 폐지 : 투자대상국가로서 호주에 대한 투자자 신뢰도 약화시키고, 그렇다고 본래 의도한 세수증대 목적도 달성 못했던 광물자원지대세를 폐지하여 호주 광물산업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참고로 광물자원지대세 도입일('12.07.01)일 이후 첫 6개월간 세수액은 최초 목표액 (연간 30억불)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3억불 정도에 그치게 되었다.

3) 환경승인절차 간소화 (one-stop-shop) 승인절차 구현 : 환경기준은 유지하되 연방과 주/준주가 협력하여 One-stop-shop환경승인절차를 이룩함으써 연간 약 10억불 이상의 이용유발 저해 원인이 되고 있는 그린테일, 레드테일을 제거하고 프로젝트 조기 착수여건을 조성하였다.

4) 탐사 인센티브제도 도입 : 산업대표들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결정하여, 2014.07.01부터 자원개발기업의 Taxable income 에서 그린필드 탐사비용을 공제하는 (상한1억불)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그 성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지속여부를 결정토록 하였다.

---

2) 김범준, 주요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III), 한국법제연구원, 2009 at 30.
3) 산업통상자원부, 국제에너지 자원 동향, 호주 신정부의 자원에너지 정책방향, 2013.10. at 1-2

5) Coal Seam Gas 관리 정책 추진 : 탐사와 채굴에 대한 농부들의 동의가 있고 지하수 공급에 장기적 손실이 없으며, 농업생산이 영구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세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Coal Seam Gas 개발을 지원하도록 했다.

6) 해양 유전개발 설비에 대한 보호 강화 : 해양오일과 가스 개발 시설에 대한 보호를 위해 비즈니스 업계와 협력하여 해상 감시체제를 업그레이드하여 해양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7) 원유전 및 가스전 보류 탐사권 허가 요건 정비 : 보류탐사권 (Retention Licsense) 이 단순한 상업적 이익 유지 차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원유, 가스생산을 보장하는 광산개발권 (Mining License) 신청으로 연결될 수 있돌록 보류탐사권 허가 요건을 정비하였다.

이와 같은 기조외에도 모든 정부기관에서 호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상당히 잘 정비된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체계를 유지함으로서 막대한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호주내에서 광업허가권을 보유하는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법률 체계와 시스템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인 투자 유인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호주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투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심의회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에 통지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호적인 호주 외국인 투자 정책에 따라 외국기업이 호주 광산회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거절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4] 이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투자를 통해서 광산에 투자를 하게되면 호주 경제 자체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는 기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흔히 일반적으로 규제와 법제체계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호주 정부의 정책은 여러가지 규제 장벽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개방적이며 안정적인 투자 구조를 제공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데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광산 프로젝트에 직접 외국인이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런 제도적 뒷받침으로 인하여, 호주 역외지역에서 광산개발 투자와 관련

4)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과는 별개로 중국이나 중동처럼 법적으로 투명성이 약한 국가의 국부펀드는 지배구조나 투자관행에서 상당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호주정부에서는 2008년 2월 "외국정부 관련 투자에 관한 원칙 (Principle Guilding Consideration of Foreign Government Related Investment in Australia, 2008)을 제정하여 외국정부 및 정부관련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정부의 국부펀드 심사강화에 따른 한국의 호주 자원시장 진출 전망, 대외정책연구원. 2008.3

하여 금융조달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가 있다. 단순히 정치적인 수사로서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하니라, 정부차원에서 직접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는 탓에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정책을 펼친다고 볼 수 있다.

2. 자원개발 관련 법률 현황

최근의 호주내 광산산업은 유례없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중국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르는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투자 수요증가가 있다. 게다가 호주는 기존 일본, 한국 등 거대 자원 소비시장과의 인접성으로 인하여 일정수준의 소비처를 기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중국의 가세는 호주 광산업을 더욱 더 급속하게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런 에너지 자원 수요 증가에 따라 호주의 에너지 관련 광업법도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호주 자원산업의 중요한 요소는 광산개발업자와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법률적 Framework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탐사단계에서부터 개발 및 이후 운영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체계화된 법률적 Frame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호주가 자원산업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지역으로 꼽힌 것도 눈여겨 볼 만한 것으로 보인다. 그외 호주 자원산업에 투자를 유도하는 다른 요소로는 우호적인 법률 및 규제제도 외에 다양한 형태의 광물자원의 풍부한 매장량과 안정적 사회, 정치제도 그리고 아시아 지역과의 인접성이라고 볼 수 있다. 호주의 자원개발 법률 체계는 호주지역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규제와 인센티브를 두고 있고, 이러한 제도 자체도 호주 자원개발의 역사만큼 다양한 상황과 변화를 통해서 고유한 법제로 발전되게 되었다.[5] 따라서, 본 편에서는 석탄과 관련된 호주 자원개발 법률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나아가 석탄개발을 규제하는 광업법 사항과 관련된 환경, 원주민 규제 및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규제나 법률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5] 김성호,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협력 법제연구 (III), 2013. 13

표1 호주의 자원개발 관련 규제기관[6)]

기 관	권 한
산업/관광/자원부 (DITR)	■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과 투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 ■ 제조, 자원, 서비스 부분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해외투자의 촉진
대외무역부 (DFAT)	■ 무역정책과 외교정책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국익 극대화 ■ 구체적으로는 호주의 안전보장, 경제 및 고용의 성장, 국제적 협력 강화, 해외 호주 시민 보호, 대외적 무역정책 수립
다문화이민/원주민부 (DIMIA)	■ 외국인 출입국, 시민권부여와 박탈, 다문화보호, 원주민 관련 법령 시행 등
환경/유적부 (DEH)	■ 자연환경 및 문화적 유산의 보호와 정책수립 ■ 호주가 가입하고 있는 환경조약에 대한 업무

Ⅲ. 호주 석탄개발 관련 법제 현황

1. 호주 광업법 개관

호주의 자원개발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제를 분석코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호주의 국가체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호주는 기본적으로 연방국가이며 각각의 주 또는 준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에너지 자원개발도 일반 연방법(commonwealth)과 주법(State law)의 적용을 받는다. 호주는 6개의 주와 1개의 특구 (Territory)로 구성되어 있으며[7)],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연방법의 적용을 받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주 법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다.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구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호주헌법을 통해서 각각의 주가 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주가 제정한 법률에 적용을 받게되며, 연방법은 그외 자원개발과 관련된 금융 또는 거래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된다. 즉, 연방정부에게는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 고용, 환경, 인프라에의 접근,

6) 김범준, (주2). 46-47 참조

7) 6개의 주, 1개의 특구는 VIC (Victoria), WA (West Australia), SA (South Australia), QL (Queen' s land), NSW (New South Wales), TAS (Tasmania), NT (Northern Territory)

과세 및 국가소유권에 관해 일정한 권한을 주는 반면, 주 (또는 준주)에서는 광물에 관한 인허가 권한 및 실시료 (Loyalty), 인지세와 같은 수수료 (Fee)의 징수 등의 과세권한을 해당 주 (또는 준주)가 가지게 된다. 이렇게 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연방법과 해당 주법이 규율하는 대상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으므로 한가지 규정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병립해서 각각의 자원개발관련 사항에 적용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연방법과 주법간에 충돌이 발생하면 연방법이 우선하게 된다. 연방법과 주법은 기본적으로 영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기관은 위의 법률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적용을 받게 된다.[8)]

이 처럼 광산개발과 관련된 사항들은 해당 주나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형태의 광업법을 가지고 있는듯 보이나, 대체로 유사한 형태의 내용과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호주에서 광산지역이 가장 많이 분포된 Western Augtralia (WA)주의 관련법이 자원정책의 좋은 예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산개발과 관련해서는 4개의 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광산개발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 WA주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률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광업법 (Mining Act 1978)

광물탐사 단계부터 채굴에 이르기 까지 WA 주 구역내의 채광작업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관할, 감독하는 법으로서 광산업체가 본 법을 위반한 경우 WA 주 정부는 해당 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본 법과 관련하여 주정부와 광산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주 총독 관할 법정 (Warden’s court)에서 분쟁 조정이 시작된다

B. 환경보호법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WA 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 환경법에 의해서 해당 지역내 광산개발 작업이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광산개발 작업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도 있다.

C. 토지관리법 (Land Administration Act 1997)

채광법에 의하면 1899년 이전에 취득한 광물자원을 제외하고는 WA주내의 모든광산과 광

8) Robin H. Chambers, An Overview of Australian Legal Framework for Mining Proposal in Australia, Chambers & Lawyers. May 2006

물자원은 연방정부에 귀속되어 있는바, 광산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임대권을 연방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법을 통해서 연방정부로부터 주 정부로 이양된 토지관리 권한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D. 원주민토지보호법 (Native Title Act 1993)

1992년 호주 연방 최고법원인 HCA (High Court of Australia)의 결정으로 제정된 법으로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 인정 및 보호 목적으로 원주민 소유의 토지거래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광산개발 지역이 원주민 소유 토지일 경우 본 법의 적용를을받게 되어 있으므로, 상거래 능력이 부족한 원주민들이 토지거래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연방정부가 직접 마련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2. 자원개발 관련 광업법 기본 법제

A. 자원개발과 관련된 주 법률 체계

각 주는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해당 주의 자원개발 산업을 지원하고자 법률적 행정적 제도들을 개별적으로 제정하고 규제와 지원을 병행해오고 있다. 각각의 주가 동일한 형태의 규제와 규정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동일한 수준의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각각의 주에서 해당 광산 또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개발권 그리고 광산개발과 관련된 규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주로 1) 광업법 (Minning Act)을 통해서 각각의 주별로 광산개발을 위해 지정된 구역에 대한 개발 허가 및 채굴리스(Mining lease)에 대한 사항을 다루거나, 2) 혹은 주정부와 광산개발 업자 사이의 계약(State agreement)을 통해서 개별 광산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두가지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9)]

B. 광업권의 의의

각각의 주별로 광업법을 통해서 주로 주정부가 소유하거나,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광산개발권을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업법은 광산개발과 관련한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광업권 취득을 할 것 인지 해당요건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일단 광업개발권이

9) Robin H. Chambers, (주8). 6

취득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해당 광산의 채굴허가 및 개발, 운영과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 및 사전인가와 관련된 규정도 포함하게 된다. 사전인가와 관련된 제도를 다룸에 있어, 호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필수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최초 탐사단계, 추가 탐사 및 평가 단계, 그리고 채굴단계로 나누어 진다. 주 정부에서 허가하는 사항은 크게 각각의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체 자원개발 단계에서 탐사와 조사단계에 관한 절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위 절차에 관한 규정은 주로 탐사단계에서 탐사와 관련된 허가를 취득한 자가 본격적인 광산 개발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허가를 선 취득한 광산개발자 중 탐사 개발을 수행한 광산개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예를들면, 여러가지 사전인가 사이에서 광산개발과 관련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주기 위해서 탐사단계에서 광산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선 투자한 광산투자자를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그 이후에 전개될 광산 개발권에 대해서도 확실한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보호를 하게 되는 것이다.[10)]

C. 광산개발 허가 및 개발권

넓게 보면, 각각의 주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광산허가 형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탐사허가 (Exploration Liscense): 허가권자에게 광산을 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며, 후에 광산개발 또는 일반 목적상 개발권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허가사항이다. 2) 유보라이센스(Retention Liscense): 허가권자에세 추가적으로 광산에 대한 개발 채광을 유보할 수 있는 허가로서 광산개발 또는 일반목적상 개발권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허가사항이다. 3) 채굴리스 (Mining Lease) : 광산개발업자에게 광산을 개발하고 토지로부터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11)] 위 권리는 배타적 권리 이기도 하지만, 광산개발이 이루어 지는 지역에 원 토지소유자가 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의 원할한 해결을 통해서만 탐색, 채굴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주어지게 된다. 광산개발의 전형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12)]

10) Robin H. Chambers, (주8). 7
11) Robin H. Chambers, (주8). 7-8
12) 김성호, (주5). at 58

	탐사권	채굴권	평가리스/보유권
목적	광물개발을 위한 채굴 준비단계로서 수집된 정보로서 광산의 상업성 결정	허가지역의 광물을 확인하고 상업생산 개시 및 매각하는 작업도 가능	광물발견부터 상업생산가능한 시기까지 허가 지역을 보유
기간	통산 5년으로 갱신가능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WA에서는 21년 갱신가능)	통산 5년으로 갱신가능
권리	토지 출입 및 조사목적 채굴 가능하고, 발견된 광물에 대해서 채굴의 우선권 부여	광물을 채굴할 권리, Loyalty지급 조건으로 채굴한 광물 매각가능	평가목적의 탐색 및 채굴 가능, 광맥 발견이후 15년 이내 상업성 인정되는 경우 권리자 권한 인정

위와 같은 광업권은 각각의 해당 주 또는 준 주의 관할 등기부(Register)에 등기가 되고 일반에게 공개가 되기는 하나, 등기부에 등재가 된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권리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등기없는 광업권의 양도만 무효로 된다는 점이 중요하며, 등기의 효력이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볼 수 있다. 위 단계별 광업권에 대해서 해당 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를 하게 된다.[13)]

1) 프로젝트 활동 관련 보고 :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해당 토지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기간 동안 특정액 이상의 개발 사업비를 투자토록 하는 목적
2) 노동조건 준수 : 광산개발 현장의 노동근로 조건 준수
3) 정기보고 : 법률 및 관련 조건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
4) 보증금 납부 : 광산개발 종료 후 환경 복구를 위한 의무이행 담보 목적 징수
5) 임차료 지급 : 토지 소유자에게 광산개발에 대한 정당한 토지 사용료 지불
6) 실시료 (Loyalty) 납부 : 광산 개발 후 광물을 상업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 물량에 대해서 정부에 실시료를 납부
7) 보상금 지급의무 : 광산개발의 결과 토지의 손상 또는 오염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권이 침해된 경우에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할 의무

광업권의 양도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거래상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광업권이 양

13) 김성호, (주5). at 59

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정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경영권의 변경"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 호주기업과 외국기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주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하고 있는데, 호주기업의 경우에는 50% 이상의 1) 이사 지명권, 2) 주총의 의결권 취득과 3) 발행 총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경우 15% 이상의 1) 이사 지명권, 2) 이사회 의사결정, 3) 주총의 의결권 취득 및 4) 발행 총주식의 취득을 한 경우에 주정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다.[14)]

3. Western Australia주 석탄 개발 절차

일반적으로 호주의 석탄 및 광산개발과 관련된 법제는 보통 Western Australia(WA)주 개발 법규체계를 중심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원래 WA주가 호주 지하자원의 보고로 철광석과 LNG, 석유, 미네랄 샌드, 리튬 등 각종 개발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원 및 관련 인프라 투자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자원개발이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WA주의 광업개발 절차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여러주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석탄개발 법제의 근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전반적인 호주의 석탄개발 절차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A. 탐광 허가권 (Prospecting License)

본 탐광 허가권은 최초 탐사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승인을 구하는 허가사항으로 허가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1) 탐광 조사를 위해 일정지역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 2)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탐사 조사에 필요한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 3) 허가한 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지역에서 토양, 바위, 광물 등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 4) 최종적으로 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단수 또는 복수의 광산허가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본 탐광허가권의 신청 절차는 다른 절차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하고 조속히 진행이 된다. 따라서, 신청자는 허가요청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사항 및 지도 등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탐광계획 또는 관련 Program 등 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14) 김성호, (주5). at 60

본 허가권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고, 허가권 보유권자는 초기 허가권의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내에는 동일한 지역에 또 다른 탐광이나 탐사허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15)]

B. 광물 탐사권 (Prospecting Liscense)

탐광허가와 마찬가지로, 광물탐사권은 기본적으로 광물 매장지역에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를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부여되는 허가권이다. 본 허가는 기본적으로 탐광허가권과 동일한 권리가 부여되나, 절차상으로 탐광허가권과 비교하면 다소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예를들면, 신청자는 해당지역에서 수행할 탐사행위에 대한 상세한 program 자료, 탐사에 소요될 필수 비용,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재정적 능력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지방신문에 탐사권 신청내용을 공고 할 의무가 있다. 공고 후 일정기간내 관련부처 장관에게 반대의견이 접수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법원 (Court)에서 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되며, 해당 법원은 관련 부처 장관에게 승인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본 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허가권자는 보상을 해야 한다. 1) 토지 표면에 손상을 입힌 경우, 2) 현재 사용 도로에 방해가 된 경우, 3) 토지 이용에 방해가 된 경우, 4) 기타 토지사용과 관련하여 방해 또는 사용수익의 감소, 사회적 불편 증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보상할 책임을 지게된다. 일반적으로 광물탐사권은 5년 동안 승인이 나며, 그 후 1~2년 동안 추가 갱신이 되고, 마지막으로 1~2년 정도 갱신이 가능하나, 아주 예외적으로 해당 주무부처 장관의 재량으로 승인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본 기간은 탐사 조사를 위해서 충분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광산개발 단계로 가기 위한 추가적인 개발 움직임이 없으면, 3년 이후부터 허가 지역이 줄어드는 조건이 부여된다.[16)]

C. 보유권 (Retention License)

일반적으로 보유권은 최초 탐사이후에 광물은 발견하였으나, 특정지역 광산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을 때까지 개발을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요청되게 된다. 만약 탐사권에서 경제적으로 광산이 가치가 있어 채굴리스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보유권 신청자체가 필요없을 수도 있다. 신청절차는 광물탐사권 절차와 비슷해서 상세한 업무 프로그램과 3자에 대한 공지도 필요하게 된다. 또한 이와 더불어 1) 허가권의 필요한 대상이 되는 특정한 광물이 존재하고 있고, 2) 다음 중에 하나의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i) 해당 광물이 미래에는 경제적 가

15) Robin H. Chambers, (주8). 8-9
16) Robin H. Chambers, (주8). 10-11

치가 있을지 모르나, 현재는 경제적으로 채굴이 곤란할 수가 있거나, ii) 확인된 광물개발이 당분간 지연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거나, iii) 광산개발에 필수적인 승인을 얻기에는 곤란한 현실적인 정치적 환경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만 보유권 허가가 승인되게 된다. 위 사항외에 본 보유권의 허가권자에게는 광물 탐사권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가 인정되게 된다.[17)]

D. 채굴리스 (Mining Leases)

채굴이 성공적임이 드러나고, 광산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경우에는 신청자는 공식적으로 채굴리스를 신청하게 된다. 만약 신청자가 보유권이나 광물탐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지역에 광물개발을 희망하는 다른 3자들 보다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채굴리스는 탐사권 또는 보유권과는 달리, 광산개발과 관련하여 토지와 관련된 권한과 광물을 채굴할 권한이 주어진다. 채굴리스 신청자는 광산개발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채굴리스 허가과정의 공정성이 수반되도록 공지나 공고도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일반적인 채굴리스에 대한 제한이라고는 허가지역은 10 입방 km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단 채굴리스가 허가가 나면, 주 정부는 허가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기간, 임차, 특정 지출 요건, 실시료 (Loyalty) 등이 명시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굴리스를 통해서 광산개발자는 해당지역으로부터 광물을 채굴함으로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는 점이다. 허가권자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 보고의무와 일정지출 의무사항을 준수함으로서 허가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게 된다. 지출의 경우 본 지출은 실시허가에 상응한 정도라야 하며, 해당 광산에 일정한 금액이상의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채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은 채굴방식에 따라 다른지만, 노천채광 또는 Surface 채광인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광산이 소재한 토지를 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허가기간은 탐사권이나 보유권에 비하여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 허가권자가 부여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 채굴리스의 연장 또는 갱신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18)]

17) Robin H. Chambers, (주8). 12
18) Robin H. Chambers, (주8). 13

4. 호주 자원개발 관련 법적 절차

A. 광물 탐사권 (Exploration License)

일반적으로 광물 탐사권은 지원자가 탐사활동을 개시하기 위해 해당 주에 신청하고 허가해 주는 것으로, 광산개발업자는 다음사항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 1) 토지의 지상, 지하에 있는 광물을 탐사할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2) 추가 탐사 및 조사 단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까지 굴착을 하고 구멍을 파는 등 시추목적에 필요한 작업, 운영, 시추를 할 수 있는 권리, 3) 허가를 받은 해당 토지로부터 일정 허가 시추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양, 토질, 바위, 암석, 액체류 등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 4) 탐사가 종결될 즈음, 해당 시추허가와 관련하여 토지에 대해 채광권을 신청하거나 승인받을 권리 등이 부여된다.[19)]

탐사권에서는 탐사를 통해서 유효한 매장량이 발견되면 해당지역에 채광권을 신청할 수 있는 우선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 신청자는 해당지역에서 수행될 탐사활동과 이와 관련된 자세한 작업 Program, 탐사에 소요될 비용과 신청자가 사용할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이 신청서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 신청자의 신청내용이 지방신문을 통해 알려져야 하는데, 공고이후에 어떠한 반대도 정해진 기일내에 접수되지 않아야 하고, 일반 청문절차가 법원을 통해서 개최되고 법원에서는 해당 절차이후에 담당 장관에세 탐사승인에 여부에 대한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또한, 탐사리스 허가 신청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 1) 토지 표면에 대한 손실, 2) 현존하는 도로 방해에 대한 손실, 3) 개선사항에 대한 손실, 4) 기타 토지사용의 방해, 손실의 발생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방해 등에 대하여 광산의 재산 가치와는 별도로 산정하여 지불되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탐사 허가는 5년동안 승인된다.[20)] 위와 같은 일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각 주별로 신청, 의견수렴 및 공시토지소유자와의 관계 및 보상, 평가 및 승인, 허가면적, 허가기간 및 갱신, 허가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1)]

i. 광물탐사권의 신청 : Queensland 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상세한 탐사방법과 투자비 지출계획이 포함된 탐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취득
ii. 공시 및 의견수렴 : Queensland 주를 제외한 모든지역에서 탐사권 내용을 공시해야하며, New South Wales 주와 Queensland 주를 제외하고는 광물 탐사권에

19) Robin H. Chambers, (주8). 7
20) 김성호, (주5). at 63
21) KOTRA, (주1) , p 37-39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Western Australia주와 Tasmania 주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며, 특히 Tasmania 주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토지나 부동산 소유주만이 의견을 제시 가능

iii.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및 보상 : Queesland 주에서는 해당토지에 진입하기전에 토지소유주에게 진입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New South Wales 주에서는 탐사권자가 탐사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토지소유주와 토지 진입에 대해 사전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가 안되면 중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함. 탐사권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손실(표면상 손실, 다른토지로 부터의 격리, 접근로의 봉쇄/변경, 기타 훼손)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을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야 함. 여기서 보상가격은 광물의 수량이나 가격과는 무관하게 손실을 기준으로 산정됨. 만약 탐사권자와 토지 소유주간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무산될 결우 감독법원의 중재나 법원이 보상금액을 결정

iv. 평가 및 승인 : 모든 신청서는 기본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평가되어야 하며, 탐사권 승인에는 환경관리와 원상복구에 대한 조건이 허가전에 부여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승인 이후에 추가로 조건이 부과되기도 함. Queensland주는 다른 주들과는 달리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광산/에너지부 (Department of Mines & Energy)가 아닌 환경보호기관에서 담당

v. 허가면적 : South Australia주와 Tasmania 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탐사권 허가지역을 위도 1분, 경도 1분으로 구획한 경위도 블록으로 설정함. 광물탐사를 위한 최대의 면적은 주별로 다르며, 신청건 별로 1건부터 Western Australia 주의 70블록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Northern Territory 주는 최대 500블록까지 신청 및 승인 가능

vi. 허가기간 및 갱신 : 광물탐사권의 허가기간은 통산 3년 또는 5년이며, 탐사권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일부 면적을 포기하기도 하며, 주정부도 각각의 사안별로 필요에 따라 허가조건 변경 가능

vii. 허가비용 : New South Wales 주와 Victoria 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비와 연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50블록에 대한 탐사권의 연간 임대료는 Victoria 주의 연 A$200 에서 부터 Western Australia주의 A$4,120 등 주마다 다양함. 탐사권의 이전 및 정지비용도 상이한데 New South Wales 주는 탐사권 거래 수수료가 탐사권당 A$350이고 이전 등록비용은 A$360이나, Victoria주의 경우 처리비용을 부과하지 않음

B. 평가리스/ 보유권 (Retention License)

보유유지 허가는 일반적으로 허가권자가 최초 탐사중 광물을 발견했으나, 해당지역의 광산이 경제적으로 유용하게 될때까지 추가 개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 요청할 수 있는 허가 사항이다. 이 단계는 광산개발업자가 만약 경제적으로 여건이 가능하여 탐사허가 단계에서 채굴리스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보유권 허가 신청 절차는 탐사허가를 위한 절차와 동일하다, 따라서, 신청자는 반드시 상세한 작업 Program을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WA 주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허가 신청시 다음사항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 1) 허가승인이 추진되는 지역에는 확인된 광산자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2) 존재하고 확인된 광물에 대해서 당분간 다음사유로 인해서 불가함을 공지해야 하는데, i) 해당 광물이 조만간 경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나, 상업적으로 운영가능 할 것 같지만, 당분간은 경제성이나, 상업적으로 곤란하다는 내용, ii) 해당 광물이 현재 또는 제안된 광산운영을 미래로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또는, iii) 필수적인 승인을 득하는데 정치적, 환경적 기타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알려야 한다. 평가리스/보유권은 탐사허가권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광산업자에게 부여되는 채굴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우선권도 가지게 된다.[22] Victoria 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각각 다른이름으로 평가리스/보유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New South Wales 주는 AL (Assessment Lease)로 Queensland 주는 MDL (Mineral Development Lease)로 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각 주별로 신청, 신청내용 공시, 허가기간 및 조건, 보상,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3]

i. 신청 : 사업계획서와 함께 해당광산의 상업성을 입증해야 함. 신청절차는 대부분 주의 광물탐사권 신청절차와 유사
ii. 신청내용 공시 : 광물탐사권과 마찬가지로 신청내용을 공개하고 토지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Western Australia주와 Tasmania주는 평가리스/보유권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일반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Tasmania주는 해당 토지의 소유주나 점유자 또는 관계자만이 이의 제기 가능
iii. 허가기간 및 조건 : 허가기간은 통상 5년이며, 갱신이 가능하고 채굴권 신청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며, Western Australia주는 광산개발권을 승인받는 권리를 부여

22) Robin H. Chambers, (주8). 11-12
23) KOTRA, (주1) , p 39-40

iv. 보상 : 광물탐사권과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해당토지의 손실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함. Western Australia 주, South Australia 주, New South Wales 주는 보상금을 토지 사용료와 손실보상 및 사회적 피해액으로 산정을 하며,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중재를 하기도 하며, Queensland 주는 감독법원 대신 토지와 자원업무를 관장하는 법원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Tasmania주는 사유지에 보유권을 신청하는 경우 사유재산 채권을 요구

v. 비용 : 신청비는 연간임대로, 취급수수료 등 각 주별로 다양하며, Tasmania 주는 A$303, New South Wales 주는 A$1,800 을 부과

C. 채굴리스 (Mining Leases)

일단 탐사가 성공적이라고 증명되고 채굴업자가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경우에는 신청자는 공식적으로 채굴리스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미 탐사허가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광산업자는 해당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광산업자들에 우선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채굴리스는 광산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가치있는 허가권으로 인정된다. 탐사권과는 달리 채굴리스는 광산개발자에게 토지와 광산 채굴과 관련된 권리로서 광산개발을 위해 부여되는 실질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채굴리스의 신청자는 반드시 광산개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 내용에는 광산 개발관련 요약 또는 내용들을 제공해야 하며, 채굴허가 승인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시절차도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채굴리스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주의 허가 관청에서는 공식적으로 리스를 부여하며, 여기에는 광산개발자의 권리와 의무사항이 포함되어있고 특정 기간, 임차료 지출요건 및 광산사용료에 대한 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채굴리스는 광산개발자에게 해당 토지로부터 수익을 위해 광산을 채굴하는 절대적인 권리가 부여되며, 이를 바탕으로 광산개발업자는 채굴한 광물을 팔거나, 현물을 생산할 수가 있다. 광산개발업자는 광산개발과 더불어 토지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의무와 규정된 지출경비내용을 준수하면서 채굴리스를 유지할 의무가 부과된다. 일정 수준의 지출 요건은 광산개발업자에게 부여된 허가사항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금이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를 토대로 특정한 수준의 자금이 반드시 해당 광산개발지역에 투자되어야 한다. WA주와 마찬가지로, 채굴리스에 따라 이행되는 광산개발로 인해 토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노천채광으로 광산개발할 계획이 수립되면, 광산개발업자가 광산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채굴리스의 허가기간은 탐사허가에 비해서 상당히 긴 편으로 채굴리스 허가를 득한 광산개발업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조건

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충족을 못시킨 경우가 아니면 추가적인 채굴리스 허가는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누구든지 채굴리스를 신청하는데 있어서는 제한이 없으나, 해당지역의 탐사권이나 유보승인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권이 있는데, 위와 같은 일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각 주별로 신청, 신청내용 공시, 허가지역, 보상, 환경관리. 허가기간, 허가면적, 비용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4)25)]

i. 신청 : Queensland 주에서는 광물탐사권이나 유보승인권이 있는 경우에만 채굴리스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광산개발에 대한 계획 및 특이사항을 제출해야 하는데, Western Australiaw주와 Queensland 주는 광산개발에 필요한 상세내용을 추후 제출 가능토록 하고 있다. 신청절차는 대부분 주의 광물탐사권 신청절차와 유사

ii. 신청내용 공시 : Tasmania 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신청자가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신청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이 신청내용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정부간행물이나 지역신문을 통해 대중에 공개해야 하고, 신청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New South Wales 주, Western Australia 주, Queensland 주, Tasmania 주, Northern Territory 주에서는 공청회 개최가 필수 적이며, Tasmania 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토지소유 또는 점유자나 이해 관계자로 한정

iii. 허가지역 :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광산 채굴리스 허가지역을 거주지나 사용중인 사유지에서 100M~200M 떨어진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South Australia지역만 400M 이상 떨어진 지역만 허가하고 있고, Western Australia주는 공유지에 대한 허가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Victoria주는 공유지에 대한 허가 거부권이 없음.

---

24) KOTRA, (주1) , p 40-41

25) 광산 채굴리스와 별개로, Western Australia 주의 경우에는 대단위 광산개발 프로젝트의 경우에 해당 지역 주정부와 광산개발사업가 간에 해당 광산의 개발과 관련하여 주 정부간 계약 (State Agreement)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체결이 된 후에 해당 주의 국회에서 인준을 받는 것으로 유효하게 된다. 또한 본 주정부가 계약을 통해서 일반적인 탐사지역 크기보다 큰 지역에 대한 허가 또는 일반 사업기간 보다 긴 기간의 기간에 대한 개발권리를 제공함 으로서 해당 광산프로젝트의 확실성을 좀 더 부여하는 효과를 가지게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주정부의 입장에 따라, 해당 광산 프로젝트만을 위해서 특정 사용료 (Royalty rates)를 제공한다 던가, 항구나 철도 같은 대단위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설치해주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주 정부간 계약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나. 과거에는 철광석과 석탄 개발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주 정부 계약의 경우에는 광산개발 신청자가 장기간 프로젝트의 개발을 확약하고 동시에 해당 프로젝트가 상당히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 정부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이므로 과거 대단위 광산개발이 일어났던 시대에 많았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iv. 보상 : 광산 채굴활동에 따른 보상은 보유권에 대한 보상과 유사하며, Queensland 주와 Tasmania주에서는 광산개발권 승인 전에 보상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노천채광이나 지표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광산개발업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

v. 환경관리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승인취득 후 광산개발 신청이 가능하며, 환경복구기금을 채권이나 증서로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광산 채굴리스 승인이후에 환경 복구 조건을 추가로 제시할 수도 있음

vi. 허가기간 : Queensland 주에서는 허가기간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고 Tasmania주와 Northern Territory주는 주무장관이 결정하나, 광산 채굴리스의 허가기간은 통상적으로 25년이며, 갱신도 가능

vii. 허가면적 : New South Wales 주, Queensland 주, South Australia 주, Tasmania 주에서는 최대 허가면적이 있으며, Victoria 주는 장관의 승인들 득하면 260헥타르 이상도 허가 가능

viii. 비용부담 : New South Wales주 외의 지역에는 광산개발업체가 연간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며, 광산개발권 허가에 따른 비용은 지역별로 상이하나, 첫해의 경우 신청비와 임대비를 합하여 100헥타르당 Western Australia 주는 A$1,200, Queensland 주는 A$4,340를 부과하며 처리비용도 각 주별로 다르고 New South Wales 주의 명의이전 및 등록비용은 A$1,260임.

D. 최저지출조건 (Minimum Expenditure Conditions)

광산개발과 관련하여 각 주정부 및 준 정부는 탐사권, 채굴리스 등과 관련하여 해당 탐사권자가 광산개발지역에 부과된 최저지출액을 소비해야하는 조건을 부과하게 된다. 해당 주정부에서는 광산개발을 통해서 인근 토지가 적극적으로 개발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다. 실제 지출 금액에 대해서 허가권 보유자는 연차활동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하며, 해당 정부의 관청은 보고된 지출액을 확인/검토하고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으면 이에 대해서 통지를 하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광업권자가 신청을 하면 위 최저지출조건을 면제해 주기도 하는데, 감독재판소 (Warden’ s Court)에서 위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서를 해당 주 관청에 보내게 된다. 관련법 (WA의 Minining Act 102 (c))에 따라서 지출조건의 면제사유는 1) 광업권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우, 2) 작업평가 및 향후 광물탐사 및 채굴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자본을 조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3) 시설 및 기계의 구입 및 조립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4) 토지가 작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5) 광산이 경제적이지 않는 경우, 6) 장래에 가동할 광산인

경우, 7) 정지적 또는 환경적 문제에 의하여 채광이 저해 혹은 제한된 경우, 8) 프로젝트안의 하나의 사업이 다수의 광구를 대상으로 해서 일괄비용으로 집행된 경우에 한하여 최저지출조건이 면제되게 된다.[26]

5. 환경보호 관련 법제

호주의 광산개발 관련 법규는 환경관련 법률 및 규제사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광산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연환경의 보존 유지가 각 주 정부의 중요한 책임사항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환경과 관련하여 일부 법률을 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 또는 준 주 정부가 각각의 지역에 광산개발과 관련한 환경관련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이 두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연방법률이 우선하게 되지만, 개인이나 기업은 1차적으로 자신의 광산이 소재한 지역의 주정부의 환경관련 법규에 구속을 받게 된다. 비록 각각의 주별로 여러 형태의 환경관련 규제 또는 법률이 존재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환경관리를 통해서 자원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평가, 건설, 조업, 폐업 등 모든 단계에 걸쳐 통합적인 관리를 하는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정부의 환경관련 규제 사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는 환경보호/생물다양성 보전법 (EPBC Act :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에 의거 다음 사항의 경우 연방정부의 승인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1) 프로젝트가 연방정부 관할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2) 프로젝트가 국가전체의 환경 (호주의 해양환경, 세계역사 및 문화유산,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습지[27],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조류나 철새, 원자력활동)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연방정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승인절차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면,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적법성을 판단하여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서로간의 Bilateral Agreement에 의거 연방정부는 국가적 주요환경 요소들에 대한 평가만 부담하고 그외에는 주정부에서 하도록 합의하였다.[28]

호주에서의 환경관리는 자원개발계획 (Resource Planning) 및 개발에 걸쳐 모든 단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제사항에 대해서 각각의 주정부 마다 차

---

[26] 김성호, (주5). at 66-67
[27] 희귀동실물의 중요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람사르 협약 (Ramsar Convention)을 통해 지정한 습지
[28] KOTRA, (주1). p 44

이가 있지만, 다음 세가지 단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9]

A. 사업의 통지 또는 평가 및 허가단계 (Notice of Intention, Proposal or Initial Advice Statement Stage)

광산사업에는 정부에 의한 평가와 허가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위 평가와 허가절차는 광산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미래의 영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수행되는데,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검토되는 것이 개발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신청 기간 동안 광산개발자는 예정된 광산개발기간을 포함한 여러 가지 광산개발 계획을 제출하게 되고 이는 허가, 심사목적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해당 프로젝트의 공시를 위해서도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개발계획은 다음과 같은 시점에서 즉, 1) 신규 광산개발 활동의 개시전, 2) 기존 광산 개발 및 운영업무의 변경전, 3) 폐지되거나 중단된 광산의 재운영 시 환경관련 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요구된다.[30]

B. 정부 평가 단계 (Government Assessment Stage)

개발 계획이 접수되면,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환경관련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와 어떤 환경관련 이슈가 사정이 필요한지 결정하게 된다. 만약 개발계획이 사정을 요할 정도라고 판단되어 지면, 정부기관에서 해당 정도에 따라 수행될 환경관련 평가 및 사정 단계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해당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개발계획을 검토 심사하게 된다. 1) 환경에 대한 영향의 가능성, 규모, 기간, 빈도 및 영향의 범위, 2) 주위의 생물,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 3) 계획사업에 따르는 직/간접적인 환경 영향, 4) 법정의무계획안, 공중위생, 용수, 수질 및 자원관리 등의 여러문제 등이 주로 본 단계에서 사정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ment) 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여기에는 생태계, 사회, 경제, 원주민의 이해관계 및 현재의 상태 및 미래의 환경 영향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연방차원의 환경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 진다. EIA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기초적인 수준에서 검토하지만, 환경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다양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환경 보고서 (PER: Public Environmental Report)[31] 또는 환경영향 진술서 (EIS: Enviromental Impact Statement)[32]

---

29) Robin H. Chambers, (주8). 23-24

30) 김성호, (주5). at 67-68

31) 공개환경보고서는 일반적으로 환경영향이 크지만, 범위가 한정된 경우에 작성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PER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는 1) 단일 혹은 한정된 수의 환경문제, 2) 한정적인 규모, 기간, 빈도 및 영향의 범위, 2) NOI의 중요한 부분에 한정된 경우에 작성되게 된다.

의 작성이 요구된다. 위 두가지 보고서의 선택여부는 개발계획을 검토한 후에 이루에 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위 사항에 대한 비용은 광산 개발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33]

C. 정부 승인 단계 (Government Approval Stage)

본 단계에서는 정부기관 또는 해당 장관은 환경관련 허가에 대해서 허가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되는데, 공식적인 검토기간은 통상 8주~12주 정도이며 심사과정에서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구성하게 되고 의견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한다.[34] 본 위원회가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요건 사항들 포함하여 해당 주 정부의 장관에게 그 계획이 인가될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본 보고서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정부기관이나 해당 장관은 환경허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35]

D. 기타 광산 운영관련 환경 허가

상기한 개발관련 환경허가 사항이외에도 광산운영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환경관련 허가사항이 있을 수 있다. 예를들면, 해당사업 부지의 특성에 따른 건설 및 운영관련 허가, 유역변경 및 초목지역의 개발관련 허가, 용수 추출관련 허가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련 환경 및 개발허가를 위해 필요한 시간 및 비용관련 사항들은 해당 광산개발지역에 보전이 필요한 객체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의 존재 유무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36]

이상과 같이 광산개발과 관련한 환경관련 규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만약, 관련 환경법률이나 개발계획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치 않는다면, 행정지도, 통지 또는 가처분과 벌금 등 광산개발회사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형사적 처분까지 행해질 수 으며, 광산회사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사 또는 담당 직원들도 해당 법률의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각종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37]

---

32) 환경관련 보고서로서는 광범위하고 상세한 환경평가를 실시하는 문서로서 1) 용지특유의 문제, 2) 주변의 문제, 3) 보호 문제, 4) 사업계획의 특징 등을 검토하게 된다.
33) 김성호, (주5). at 68
34) 김성호, (주5). p 70
35) KOTRA, (주1). p 45
36) Norton Rose Fulbright, A guide to developing mining projects in Australia. Norton Rose Group Guide, 1. 2012 at 14
37) Norton Rose, (주36). 14

6. 원주민과 광산개발 관련 제도

원주민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크게 원주권(Native Title)과 원주민 토지소유권(Indigenous Freehold Title)로 구분이 된다. 원주권 (Native Title)은 최근에 호주에서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며, 원주권에 대한 검토없이 광산개발을 고려할 수도 없게 되었다. 원주민 관련 법률사항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1993년에 연방차원에서 제정되고 1994년에 발효된 원주권법 (NTA: Native Title Act) 이다. 본 원주권법을 통해서 모든 광산활동을 포함하고, 해당 토지와 관련된 모든 미래에 발생할 사항에 대해서 원주권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다. 원주권은 토지소유권과는 다르게 단지 토지에 특정한 관습법적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므로 다른 특정한 권리 (토지 이용권) 등과 동시에 존재 할 수 도 있다. 원주민 단체 토지 소유권은 1966년 South Australia와 1976년 Northern Territory에서 법률로서 인정되었다. 따라서, 지방정부마다 원주민의 토지와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는 정도와 절차가 다르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38)]

A. 원주권 (Native Title)

원주권과 기타 권리사항들은 기존의 원주민의 관습법규에 따라 전통적으로 소유했던 토지에 권리를 인정해 준것으로 원주민이 해당토지와 관련하여 그들의 토지를 계속적으로 보전해 오고 있으며, 그들의 원주권도 주 정부의 법률이나 어떤 행위로도 제거되지 않는다고 보고있다. 1992년의 Mabo 판결을 통해서 원주민의 전통적 소유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현재에도 존재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를 통해서 원주권이 1994년에 발효된 원주권법 (NTA: Native Title Act)를 통해서 원주민이 원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가 되었다. 연방법원에 의하면 전통적인 법과 관습에 의하여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원주민은 원주권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해당 권리를 매각할 수는 없으며 포기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원주권은 법률 또는 기타 법률상 행위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에 존재하는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토지에 존재 할 수 있다.[39)]

B. 원주민의 토지소유권 (Native Title) – 원주민의 집단으로서의 토지소유

기존의 원주민이 관습법규에 따라 전통적으로 가지던 원주민 집단 소유지에 대해서는 원

38) 김성호, (주5). p 71
39) 김성호, (주5). p 73-74

주권과 별도로 원주권보다 강한 원주민 토지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 있다. 본 집단 소유권은 원주권과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는다.[40] 원주권은 원주민의 토지소유권보보다 열등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주민에게 활동적 권한만을 부여하는 권리이므로 형태상 으로는 토지 소유권의 형태를 띄지만, 다른 형태의 토지 소유권과는 다르게 취급된다. 이런 특징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의 집단 토지소유권은 다른 절대적 토지 소유권과는 달리 매도의 자유가 없는 게 특징이며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원주민 단체의 동의를 조건으로 토지소유권을 소유하는 토지신탁을 통해 타인에게 임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41]

C. 원주민 토지관련 권리와 광산개발

원주민의 토지관련 권리는 여러 광산 개발업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되어 왔다. 이는 원주권에 의해서 원주민에게 광산개발업자와 탐사권의 승인, 광산개발 허가를 포함한 사업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원주민 소유지에서 광산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광업법과 원주민 의 토지관련 법률에 따라야 한다. 우선, 원주민이 집단적 토지소유권을 가지는 지역에서 광산개발을 하는 경우의 절차를 살펴보면, 1) 광산개발과 원주민 토지소유권이 인정되는 지역에서의 광산개발을 위해 해당 주정부의 광업법에 따라 광산 개발 신청을 하고 주무장관이 광업법에 따라 협상을 개시하는데 동의를 하고, 2) 광산개발 지역이 만약 원주민이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면, 원주민들과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협상과정이 결렬되고, 원주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5년동안 협상이 불가하며, 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2년 후 협상이 재개 될 수 있다.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신청을 해야한다. 협상이 원할히 진행이 되면, 3) 마지막으로 해당장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광권의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원주권이 인정되는 지역에서 광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주정부는 광산개발 사업을 허가하기 전에 이를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탐사권이 허용된다. 만약 원주민이 원주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연방법원에 3개월내에 원주권을 신청해야 하고 사업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간이절차(Expedited "Fast Tracking" Process)[42]가 적용되나, 보통의 경우 해당 공고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예비협상, 그리고 협상이 결렬되면 정식협상이 시작된다.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NNTT (National Native Title Tribunal) 또는 중립적 조직을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할 수

40) 김범준, (주2). at 98
41) 김성호, (주5). p 73
42) Victoria, New South Wales, Tasmania 주에서는 간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내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하면, NNTT 또는 중립적 조직에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로부터 6개월 후에 해당 중재기관은 조건부로 탐사권리를 허가하거나 불허하게 된다.[43]

Ⅳ. 호주 외국인 광물산업 투자관련 법제

1. 외국인 투자관련 법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호주는 기본적으로 광물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광산개발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직접 투자를 장려하는 등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는 외국투자매수법 (FATA : Foreign Acquisition and Takeover Act 1975)에 의해서 호주 국가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Transaction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전부이다. 기본적으로 호주정부는 외국투자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게 현실이고, 무엇보다도 해외투자로부터 나오는 고용기회 창출 효과로 호주 정부가 이런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2008년 2월에 외국정부 소유 또는 지배하에 있는 기업의 대 호주투자 심사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재무부가 특정 외국인 투자가 등 동 가이드라인에 불일치 한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불허하거나 심사시 제기되었던 문제를 해결하도록 특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부펀드의 확산과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우려한 선진국 정부의 국부펀드 규제 움직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제하에서 외국정부 소유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사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가 심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재무부 장관에게 통보를 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재무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FATA에 의해서 설립된 FIRB가 주로 하는 역할[44]은 1) 외국인 투자가 FATA와 호주 정부의 정책과 일치하는 지 검토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을 위해 권고를 하거나, 2) 투자제안과 별개로 FATA의 운영 및 외국의 호주 투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자문을 하고, 3) 호주정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책을 호주, 나아가 외국에서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4) 외국투자자에게 가이드를 제공하고 그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3) 김성호, (주8). p 74-83
44) FIRB, Annual Report 2007-08 (2009), 3.

2. 외국투자매수법 (FATA: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FATA는 호주이외의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 또는 그 관계인이 호주내에서 투자하는 모든 행위에 적용이 된다. 외국인이라 함은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 자연인, 통상적으로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 또는 복수의 외국회사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호주내 법인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45] FATA를 통해서 호주 재무부는 외국인이 지배하거나, 취득되는 주식, 재산, 도시 토지의 취득, 호주 회사 이사회와의 합의사항, 호주에서의 사업 및 영업활동에 대한 합의사항을 검토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46]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함에 있어 재무부는 국가이익에 반하는 사업 제안의 경우 이를 금지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으므로, 금지가 아니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우려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조건으로 승인을 허락 하는 경우도 있다.

호주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FIRB에 다음중 어느 유형의 투자에 해당하는지 통지를 해야한다. FIRB에 통지가 요구되는 투자제안은 1) 외국인 또는 복수의 외국인이 자산내지 주식총액이 2억 3100만 호주달러 이상인 호주회사의 지분 1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대상회사의 호주 자회사 자산 내지 주식총액이 2억 310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호주회사의 지분 1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2) 국가적으로 예민한 분야로의 투자, 3) 새로 설립되는 호주회사 또는 신규 사업에의 1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47] 4) 투자규모와 상관없이 외국정부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투자,[48] 5) 호주 도시의 토지에 대한 권리 또는 호주 도시 토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회사나 신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통보가 필요하게 된다.[49] 여기서 "민감한 분야" 라 함은 미디어, 통신, 항공, 사회간접자본 시설, 호주 국방과 관련된 사항, 군사목적의 물품 등 국가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를 말한다.[50] 그외에 국가이익 (national interest)와 관련해서도 FIRB에서 외국인 투자심사의 일환으로서 검토되며 일반적으로 국가이익과 관련해서 1) 국가의 안정보장, 2) 시장경쟁, 3) 기타 정부의 정책, 4)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5) 투자자의 성격을 총제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게 된다.[51]

---

45) 경영권에 대한 판단 여부는 FIRB를 통해서 판단될 수 있다. 최근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권은 궁극적인 지배권을 가지는가로 판단해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가지 요소들을 특정한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성호, (주5). at 39 참조

46) Foreign Acquisition and Takeover Act 1975, Sec 18-21

47) Australia' s Foreign Investment Policy, 2009.

48) Principles Guiding Consideration of Foreign Government Related Investment in Australia, 2008.

49) Foreign Acquisition and Takeover Act 1975, Sec 26A

50) 김성호, (주5). p 41

3.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의 종류

A. 탐사관련 투자 (investment in Exploration)

탐사권 허가와 관련하여 외국기업이 해당 허가를 받는것에 대해서 추가되는 조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광물자원 또는 석유자원 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호주 또는 호주기업을 포함할 필요도 없으므로, 외국기업은 탐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새롭게 탐사권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탐사권을 구득한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 투자 매수법에 따른 투자제안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연방 외국투자규제 위원회 (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에 대해서 보고나 허가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52]

B. 광산개발관련 투자 (Ivestment in Development)

일반적으로 광업권 리스를 통해서 이를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 토지를 매수하고 채굴권 광구를 매수하는 경우에 외국인 투자매수법에 의해서 FIRB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기업이 투자한 광물자원 또는 석유 탐사활동의 결과로 인해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1000만 호주달러 이상이 된다면, FIRB 가 심사를 수행해서 재무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53]

Ⅴ. 결론

호주는 예로부터 자원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에너지 자원분야의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아왔다. 호주 정부가 자원개발과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데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투자 유치의 이면에는 호주가 가지는 지정학적, 정치적인 위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자원보유국에 비해서 낮고 법치주의가 발달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측면이 상당히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장기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특이한 위험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석탄관련 개발법제와 관련된 자원개발 분야에서 호주는 오랫동안 자원 개발을 수행해온 탓에 많은 전문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고, 경쟁력 또한 가지고 있다는 점이 호주 자원개발의 강점이 아닌가

51) PLC, Mining law in Australia, Thomson Reuters April 2013, at 6
52) 김범준, (주2). at 126
53) 김범준, (주2). at 126

생각한다. 또한, 2차 산업의 취약성으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를 통해서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단순한 조세감면 등의 지원보다는 투자지원, 중소기업 확대 등을 통해서 고용복지를 추구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호주 정부의 의도와 안정적인 제도 등을 통해서 볼때, 호주에 대한 에너지 자원 개발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인접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추고 있는 최적의 자원 수급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원 개발과 관련된 법규 나 제도를 살피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에너지 자원중 국내 화력 발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본 논문도 나름대로 그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호주가 국내 석탄 수입 분야 총 수입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비중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호주의 에너지 자원 특히 석탄과 관련된 법제는 나름대로 검토할 가치가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에너지 자원 개발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관련 법제나 환경관련 법제, 원주민관련 법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은 당연할 것이다. 최근 자유국민 연립당 정부가 과거 노동당 정권과는 달리 에너지 자원정책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고용인력이 110여만 명에 달하는 호주 에너지 자원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이에 일환으로 탄소세 폐지, 광물자원지대세 (MRRT) 폐지, 환경승인절차의 간소화 (One-stop-shop), Coal Seam Gas 관리정책 도입, 탐사비용 세액공제, 해양유전개발설비 보호 강화, 보류 탐사권 허가요건 강화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그 어느때 보다도 에너지 자원 특히 국내 발전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자원은 조만간 좋은 투자 및 개발 기회를 가지게 될 듯 해 보인다. 호주 정부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앞으로 외국으로부터 투자 및 심사를 담당하는 FIRB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 재무부 장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것임은 무엇보다도 분명해 보인다.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자원개발에 나서려는 국가에 있어서는 법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호주는 상당히 우호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를 잘 살펴야 할것이며, 더욱이 중국의 에너지 자원 투자가 거세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호주에 대한 에너지 자원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참 고 문 헌]

- 호주의 주요산업, KOTRA, 2010
- 자원개발진출 가이드, KOTRA, 2008
- 김성호, 신흥시장국(MAVU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 (III), 한국법제연구원 2012
- 김범준, 주요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III), 한국법제 연구원 2009
- 호주 자원개발 현황과 진출전략, KOTRA, 2013
- 국제에너지 자원 동향, 호주 신정부의 자원에너지 정책방향, 산업통상자원부,2013
- 호주정부의 국부펀드 심사강화에 따른 한국의 호주 자원시장 진출 전망,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8
- Australian Network of Envrionmental Defender’s Offices, Coal and Gas Mining in Australia “Opprotunities for national law reform”, the Australia Institute, 2013
- PLC, Mining Law in Australia, Thomson Reuter 2013
- Robin H Chambers, An Overview of the Ausrailian Legal Framework for Mining Projects in Australia, Chmabers and Company, 2009
- Ashurst, Mining in Australia “An introduction for investors”, 2013
- Keira Brennan, Mining in Australia:overview, Nortorn Rose Fulbrisht Australia, Thomson Reuters, 2014
- Norton Rose, A guide to Developing Mining Projects in Astralia, 2012
- Principle Guilding Consideration of Foreign Government Related Investment in Australia, 2008